

제 호			
완성검사증명서			
상 호		사업의 종류	
사무소 소재지		성명(대표자)	
사업소 소재지			
검 사 대 상			
검사기관 주소		담 당 부 서	(전화번호:)
검 사 원 성 명		검사 연월일	
월사용예정량			

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위 검사대상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마쳤으므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※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유의사항

1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(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)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2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월사용예정량이 4,0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(자동차 연료장치의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)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.
3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월사용예정량이 3,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
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

직인

년 월 일

[illegible]